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김준열 · 임무석 · 오세혁

이수경 · 이춘우 · 남영숙

김진욱 · 남용대 · 방유봉

안희영 · 신효광 · 김영선

이재도 · 김득환 · 정세현

박태춘 의원(16명)

1. 개정이유

- 가족공동경영협약서 등 가족공동협약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지원체계 규정을 신설함
- 이주 여성농어업인과 가족공동경영협약의 용어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이주 여성농어업인과 가족공동경영협약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함(안 제3조제1항)
- 다. 가족공동체 공동경영협약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의2)
- 라.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책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2)
- 마.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 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 붙임
-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 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주여성 농어업인”을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을 받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여성농어업인”이란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p> <p>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p> <p>2. ----- 제2조제4호에 따른-----.</p> <p>3. -----</p> <p>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 농어업인 중에서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신 설〉</p>	<p>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p>
<p>〈신 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①</u></p> <p><u>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u></p> <p><u>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u></p> <p><u>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p> <p><u>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u></p> <p><u>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u></p> <p><u>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u></p> <p><u>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u></p> <p><u>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u></p> <p><u>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u></p> <p><u>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u></p> <p><u>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u></p>
<u><신 설></u>	<p><u>제6조의2(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u></p> <p><u>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u></p> <p><u>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u></p> <p><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p> <p><u>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u></p> <p><u>수 있다.</u></p> <p><u>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u></p> <p><u>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u></p> <p><u>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u></p> <p><u>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u></p> <p><u>필요한 경우</u></p> <p><u>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u></p> <p><u>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u></p> <p><u>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 시책을 <u>강구</u>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제6조의3(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p> <p>-----</p> <p>----- 각 호-----</p> <p>----- 마련-----.</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 및 <u>이주 여성 농어업인</u>들이 농어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u>강구</u>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 <u>이주 여성농어업인</u>-----</p> <p>----- 각 호-----</p> <p>----- 마련-----.</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0조(자문회의) ① ----- ----- <u>자문을 받기</u>-----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법무혁신담당관	안 제2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p>안 제2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p> <p><문장 및 띄어쓰기 수정 필요></p> <p>-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p> <p><문장 수정 필요></p> <p>-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 제2조제4호에 따른</p> <p><문장 수정 필요></p> <p>-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 제2조제5호에 따른</p> <p>- 첫째, 일반적인 의미로 제8조의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해석하여도 집행 상 문제가 없다면 정의는 불필요해 보임.</p> <p>- 둘째, 제1호에서 정의한 여성농어업인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그 시행령 제3조,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제3호, 그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임. 그런데 제4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등에 해당 하면 위 관련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보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취지인지 다시 확인 필요</p>

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p>- 셋째,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니고 제1호의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하려는 취지라면 아래와 같이 수정 필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div> <p><위 사항을 반영한 개정문 참조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제2조제1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div>
	<p>안 제3조</p> <p>- 제1항</p>	<p><개정문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조의 => 같은 조 <p><문장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공동경영협약 =>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p><참조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div> <p>※ 이 조례의 목적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이므로 “양성평등, 일 가정양립실현 등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불필요해 보이며,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할 수 있다”보다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어울려 보임.</p>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토의견
	안 제4조	
	- 제1항	<문장 수정 필요>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5조제1항에 따른
	- 제2항	<추가 검토 필요> - “사업계획”이 아니라 제1항에서 언급된 “시행계획”이 아닌지 확인 필요
	안 제4조의2	<개정문 수정 필요> - 제4조2 => 제4조의2
	- 제1항	- 기본계획에도 가족공동경영협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문장 수정 필요>
	- 제2항	- 계획을 => 내용을 - 제4조 => 제4조제1항
	- 제2항 및 제3항	<띄어쓰기 수정 필요> - 이 를 => 이를 -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공동경영협약에 대해서 제3조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라면,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여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개정문 수정 필요> - 제6조2와 제6조3 =>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안 제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이 조문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협행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의2의 내용과 함께 정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p><문장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 도지사는 ※ 항이 하나이므로 항 번호는 불필요 · 제2호 및 제3호 -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유사해 보이는데, 각각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안 제6조의3	<p><조 번호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의3조 => 제6조의3 - 제1항 <p><띄어쓰기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향상 => 지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항 <p><문장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군이 => 시장 · 군수가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할 =>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안 제7조	<p><개정문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각 호 외의 부분 - “각호”을 => “각호”를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p>안 제8조</p> <p><개정문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각 호 외의 부분 - “각호”을 => “각호”를 - 하며 => 하고 - 제5호 => 같은 조 제5호 <p>안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과 같이 가지번호방식으로 신설 검토 <p><참조안></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0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 -----.</p> </div>					
[신·구조문대비표]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란의 “---”표기 시 개정 부분의 앞, 뒤 띄어쓰기 준수 <p><참조안></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현 행</td> <td style="padding: 2px;">개 정 안</td> </tr> <tr> <td style="padding: 2px;">○○은 <u>△△</u>를 □□한다.</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div> <p>안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호외의 부분 현행란은 내용을 적시하고, 개정안란은 “-----”로 표기 <p>안 제3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란 “③ <삭 제>”를 “<삭 제>”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은 <u>△△</u> 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은 <u>△△</u> 를 □□한다.	---▽★★-----.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지훈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8. 3.
관련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개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농업정책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토의견
농업정책과	개정(안) 제6조의2(지원범위)	(개정안) 제6조의2(지원범위)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안)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유 : 재원의 명확화 (개정안) 제6조의2(지원범위) 2. 도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안)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유 : 재원의 명확화 (개정안) 제6조의2(지원범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안)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이유 : 재원의 명확화
	개정(안) 제6조의3(지원체계)	(개정안) 제6조의3(지원체계) ② 도지사는 시군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검토안) -삭제- 변경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의 지역여건, 인건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행안부에서도 조직 신설은 자체 소관으로 협조 요청도 어렵다는 의견임
	개정(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정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하루를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검토안) -삭제- 삭제사유 : 현재 '농업인의 날'(11.11.)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 양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어긋날 수 있음

5

비용추계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6조의3(지원체계)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함

-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259	259	259	259	259	1,295	
	소계(b)	259	259	259	259	259	1,295	
□	총 비용(a-b)	-259	-259	-259	-259	-259	-1,295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국비							
	일반회계		259	259	259	259	259	1,295
	○ ○ 특별회계							
	○ ○ 기금							
	시 · 군비							
	민간							
	기타							
	합계		259	259	259	259	259	1,295

5. 부대의견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궁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분산된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신규시책 발굴 등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고자 함

6. 작성자 :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주사보 정민호(054-880-332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 안 제6조의3조(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 산출근거 : 86,074,000원 × 3명 = 258,222,000원

나. 비용추계방법 - 2020년도 기준인건비(일반직) 단가 준용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1개팀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 해당없음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치법규
집행부
제정·시행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외 2건)

- 관련 : 건축디자인과-14983(2020.8.5.)호, 축산정책과-7097(2020.8.5.)호, 농업정책과-9837(2020.8.6.)호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견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7.3.21.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한 결과, 안 제8조(양봉농기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 사업(20년 기준, 5개 사업, 도비 9억) 외에 신규 사업이 (교육)한건임을 전제할 때 향후 5년간 50백만원*이나향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의 지속적인 확보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조례안 제6조의2(지원범위)는 의안의 내용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범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할 것이나,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추가로 재정소요가 발생할 시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끝.

예 산 담 당 관 찬

수신자 건축디자인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무관

김정윤

예산총괄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전결 2020. 8. 7.
서정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110

(2020. 8. 7.)

접수 건축디자인과-15165

(2020. 8. 7.)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kiy0102@korea.kr

/ 비공개(5)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준열	2020.7.20	
이수경	2020.7.20	
온세현	2020.7.20	
이숙경	2020.7.20	
이	2020.7.20	
김예숙	2020.7.20	
김장호	2020.7.20	
김경우	2020.7.20	
안희영	2020.7.20	
김현수	2020.7.20	
김영선	2020.7.20	
이재도	2020.7.20	
김득환	2020.7.20	
김세현	2020.7.20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